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교육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적용되는 주 및 연방 법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이 교육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가능한 한 언제라도 불만의 조기 해결을 권장한다. 보다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 불만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는 5 CCR 4600-4670 및 수반되는 행정 규정에 명시된 일관적 불만 처리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UCP의 적용을 받는 불만 사항들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UCP)는 다음의 불만 사항들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1.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교육법 46015)
2. 성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법 8500-8538, 52334.7, 52500-52617)
3. 방과 후 교육 및 안전 프로그램 (교육법 8482-8484.65)
4. 농업 기술 교육 (교육법 52460-52462)
5. 직업 기술과 기술 교육 및 직업과 기술 훈련 프로그램(교육법 52300-52462)
6. 보육 및 발육 프로그램(교육법 8200-8498)
7. 보충 교육 (교육법 54400)
8. 통합 범주 별 지원 프로그램 (교육법 33315; 34 CFR 299.10-299.12)
9.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9-12학년 학생을 어느 학기 또는 학생이 이전에 만족스럽게 이수한 과정에 일 주일 이상 교육 내용이 없는 학과 시간에 배치 (교육법 51228.1-51228.3)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10. 주 정부 재정 지원으로 기금을 직접받거나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포함하는 교육구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참여인의 실제 또는 인종, 민족성, 피부색, 조상, 국적, 출신 국가, 이민 신분, 민족 그룹 정체성, 나이, 종교, 혼인 여부, 임신 또는 부모 신분,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의료적 상태(문제), 성, 성적 지향, 성별, 성별적 정체성, 표현 또는 유전학적 정보의 인지된 특성 또는 교육법 200이나 220, 정부법 11135 또는 형법 422.55에서 식별된 기타 특성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을 갖은 사람이나 그룹과의 관계에 근거한 차별,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5 CCR 4610)
11. 위탁 양육 가정의 학생, 노숙자 학생, 군인 가족의 학생, 이전에 청소년 법원 학교에 다녔던 학생, 이주민 학생 및 뉴커머(신입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졸업 요건 (교육법 48645.7, 48853, 48853.5, 49069.5, 51225.1, 51225.2)
12. 모든 학생을 위한 성공법 (교육법 52059; 20 USC 6301 et seq.)
13. 지방 콘트롤 및 책무안 (교육법 52075)
14. 이민자 교육 (교육법 54440-54445)
15. 체육 시간(분 수) (교육법 51210, 51222, 51223)
16. 학생 비용 (교육법 49010-49013)
17. 수유 중인 학생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교육법 222)
18. 지역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 (교육법 52300-52334.7)
19. 연방 및/또는 주 정부의 특정 범주 별 자금을 위한 통합 신청에서 요구되는 학생 성취에 관한 학교 계획안(교육법 64001)
20. 학교 안전 계획 (교육법 32280-32289)
21. 연방 및/또는 주 정부의 특정 범주 별 자금을 위한 통합 신청에서 요구되는 학교 운영위원회(교육법 65000)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22. 주립 유아원 프로그램 (교육법 8235-8239.1)
23. 면허가 면제된 프로그램의 주립 유아원 보건 및 안전 문제 (교육법 8235.5)
24. 불만제기인 또는 불만 처리 과정에서의 다른 참여자 또는 본 방침과 관련된 위반을 발견하였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는 불만제기
25. 공립 교육의 교육감 또는 대리인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주 또는 연방 교육 프로그램.

주장의 본질에 따라 대체적 분쟁 해결(ADR)이 당사자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불만제기를 해결하는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 위원회는 알고 있다. 중재와 같은 ADR 절차는 한 명 이상의 학생과 성인이 포함되지 않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과 관련된 불만제기 해결 또는 어느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중재를 제안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ADR의 사용이 주 및 연방법과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구는 모든 불만제기인들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불만을 조사할 때, 관련된 당사자의 기밀을 법에서 요구하는대로 보호되어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괴롭힘,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를 주장하는 불만제기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불만제기인 및/또는 그가 불만제기인과 다른 사람인 경우, 불만제기 절차의 원래 모습이 유지되는 한, 관련인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UCP 에 해당되지 않는 주장이 UCP 불만제기에 포함된 경우, 교육구는 비-UCP 주장을 적절한 직원 또는 기관에 회부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 교육구 UCP 를 통해 UCP-관련 주장을 해결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본 방침 및 수반되는 행정 규정에 명시된 단계(순서) 및 일정을 포함하여 UCP 와 관련된 현행법 및 요건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구 직원에게 훈련(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조사 중 취해진 조치 및 5CCR 4631 및 4633 준수에 요구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각 불만 사항 및 후속 관련 조치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유지)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비-UCP(UCP 에 해당되지 않는) 불만 사항

다음의 불만 사항들은 교육구 UCP 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특정 기관에 회부되어야 한다: (5 CCR 4611)

1.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주장하는 모든 불만제기는 카운티 사회 복지부(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보호 서비스 부서(Protective Services Division) 및 해당 법집행 기관에 회부해야 한다.(5 CCR 4611)
2. 허가된 시설에서의 아동 발달 프로그램에 의한 보건 및 안전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은 사회 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회부되어야 한다. (5 CCR 4611)
3. 고용 차별 또는 괴롭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제기는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포함하여 행정 규정(AR) 4030 - 비차별 고용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교육구에 의해 조사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4. 특수 교육과 관련된 주 또는 연방법 또는 규정, 적절한 무상 공교육의 제공과 관련된 합의 계약 또는 적법 절차 청문회 명령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은 AR 6159.1 -특수 교육에 대한 절차적 보호 및 불만제기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에 제출되어야 한다. (5 CCR 3200-3205)
5. 급식 계산 및 청구, 환급 가능한 급식, 아동 또는 성인의 자격 또는 카페테리아 자금 사용 및 공제 비용에 관한 법률 교육구 식품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은 BP 3555 - 영양 프로그램 준수에 따라 CDE 에 제출하거나 회부되어야 한다. (5 CCR 15580-15584)
6. 교육구의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나이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의 모든 주장은 BP 3555 - 영양 프로그램 준수에 따라 미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 제출하거나 회부되어야 한다. (5 CCR 15582)
7. 교과서 또는 교육 자료물의 충분성, 학생 또는 교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비상 또는 긴급 시설물의 상태, 교사 공석(결원) 및 오배치와 관련된 모든 불만사항은 AR 1312.4 - 윌리엄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Williams Uniform Complaint Procedures)에 따라 조사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Education Code 35186)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법적 참조: 교육법 섹션 200-262.4; 8200-8498; 8500-8538; 18100-18203; 32280-32289; 35186; 46015; 48853-48853.5; 48985; 49010-4901; 49060-49079; 49069.5; 49490-49590; 49701; 51210; 51222; 51223; 51225.1-51225.2; 51226-51226.1; 51228.1-51228.3; 52059.5; 52060-52077, 52075; 52300-52462; 52500-52616.24; 54000-52462; 52500-52616.24; 54400-54425; 54440-54445; 54460-54529; 59000-59300; 64000-64001; 65000-65001
정부법 섹션 11135; 12900-12996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596.792; 1596.7925
형법 422.55; 422.6
규정법, 타이틀 2, 섹션 11023
규정법, 타이틀 5, 섹션 3200-3205; 4600-4670; 4680-4687; 4690-4694; 4900-4965; 15580-1184
미합중국법, 타이틀 20, 섹션 1221; 1232g; 1681-1688; 6301-6576; 6801-7014;
미합중국법, 타이틀 29, 섹션 794
미합중국법, 타이틀 42, 섹션 2000d-2000e-17; 2000h-2-2000h-6; 6101-6107; 11431-11435; 12101-12213
연방 규정법, 타이틀 28, 섹션 35.107
연방 규정법, 타이틀 34, 섹션 99.1-99.67; 100.3; 104.7; 106.1-106.82; 106.8; 106.9; 110.25

방침 채택: 11/17/1992

방침 개정: 12/17/2002; 11/03/2010; 03/11/2014; 04/15/2014; 05/06/2014;
04/05/2016; 10/18/2016; 08/15/2017; 02/06/2018; 05/01/2018;
06/04/2019; 07/14/2020; 02/16/2021

(이전에 BP 1312)